· 항생준칙

제 1 장 목 적

제 1 조 (목적) 학생준칙은 호서대학교 학칙에 따라 학생들이 학내·외의 생활을 통하여 지켜 나아가야 할 일상 생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학생증

- 제 2조 (학생증 발급) 신입생은 입학절차를 완료하는 즉시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.
- 제 3조 (학생증 휴대) ① 학생은 학내·외를 막론하고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고 본 대학교 교직원으로 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.
 - ② 학생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자는 수강, 시험 또는 도서관 입장 및 제선거의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.
- 제 4조 (대여금지)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.
- 제 5조 (재교부)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발급부서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,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6조〈삭제〉

제 3 장 학생단체 및 학생활동

- 제 7조 (학생활동) 학생은 학풍을 진작하고 학문을 탐구하며 인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.
- 제7조의 2(건전한 집단활동) 학생단체는 모든 활동에서 안전부주의 및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(신설 2016, 9, 1,)
 - ① 집단활동 시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사전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지도교수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.(신설 2016. 9. 1)
 - ② 학생단체는 학교로부터 안전부주의 및 인권침해에 대한 지도·감독을 받아야 한다.(신설 2016. 9. 1)

[본조신설 2016, 9, 1]

제 8조 (간부자격) ① 총학생회 총·부학생회장, 단과대학 학생회장(부회장), 학부·과(전공) 학회장 및 각 자치기구의 장이 될 수 있는 자는 5학기 이상 6학기 이내 등록을 필하고 평점 평균이 2.5/4.5이 상 이어야 한다. 단. 대학의 학사개편 등에 의해 조직(신설)된 단과대학 등의 경우 3학기 이상 등

- 록자도 학생회장(부회장)이 될 수 있다.(개정 2015, 1, 26, 2017, 9, 1)
- ②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징계에 회부되어 있는 자는 간부가 될 수 없다.(신설 2017, 9, 1)
- 제9조 (활동제한) 총장은 학생 개인 및 단체의 불건전한 활동이 대학의 기능을 저해하고 질서를 문란 케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금지시킬 수 있다.
- 제10조 (단체등록) 학생단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년 초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의 구비서류 를 학생팀에 제출. 신고함으로써 학생단체로 인정된다.(개정 2016, 5, 4)
 - ① 학생단체 등록 신청서 1부(학생단체서식 1호) (개정 2015. 1. 26)
 - ② 지도교수 지도(취임) 승인서 1부(학생단체서식 2호) (개정 2015. 1. 26)
 - ③ 단체규약 및 회칙 1부(소정양식)
 - ④ 단체원 명부 및 서약서 1부(학생단체서식 3호) (개정 2015. 1. 26)
 - ⑤ 연간(학기별) 활동계획서(학생단체서식 4호) 및 전년도 실적(재등록 시) 보고서 1부(학생단체서 식 5호) (개정 2015. 1. 26)
- 제11조 (갱신발급) ① 학생단체의 존속기간은 등록된 당해 연도에 국한한다.
 - ② 계속 활동을 원하는 학생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는 학생단체의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의 등록갱신이 없는 학생단체는 당해 연도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 것으로 본다. (학생단체서식 5호) (개정 2015, 1, 26)
- 제12조 (집회신고 및 허가)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집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행사 7일 전에 학생처에 신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.(학생단체서식 6호) (개정 2015. 1. 26)
- 제13조 (게시물)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으로 광고를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(학생단체서식 7호) (개정 2015. 1. 26)
- 제14조 (간행물)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발간하는 정기. 부정기의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학생처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(학생단체서식 8호) (개정 2015. 1. 26)
- 제15조 (야간시설물 이용) 교내 학생단체 관련 시설의 사용 시간은 20:00 까지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사전 신고, 승인 후 사용 할 수 있다.
- **제16조 (경기참가)** ①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대외 운동경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- ② 학생은 총장의 승인 없이 타 단체의 운동선수가 되지 못한다.

제 4 장 출석 및 유고결석

- 제17조 (수업) 학생은 매 수업시간에 출석하여야 하며, 최소한 총 강의시간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여야 한다.
- 제18조 (단체행사 및 채플) 단체행사 및 채플 출석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.

- 제19조 (유고결석) ①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결석계를 학과·학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유고결석은 다음 각호의 사유와 기간에 국한하여 인정된다.
 - 1. 병사관계로 인한 결석 ----- 3일 이내
 - 2.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----- 5일 이내
 - 3. 학교대표로 참석한 각종 교육, 연수, 훈련으로 인한 결석 ----- 동 기간
 - 4. 기타 학생처장이 인정하는 학내의 행사로 인한 결석 ----- 행사기간

제 5 장 포상 및 징계

- 제20조 (포상) ① 학생으로 학내·외를 막론하고 선행을 하였을 때에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이사장. 총장. 학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을 수 있다.
 - ② 포상은 학업우수상, 공로상, 문화상, 체육상, 모범상 등으로 한다.
 - 1. 학업우수상 : 재학 4년간 학업성적이 전교에서 최우수한 자와 각 대학에서 최우수한 자
 - 2. 공 로 상 :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자
 - 3. 문 화 상:문화부문에 우수하고 창의적 업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
 - 4. 체 육 상:체육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거나 체육을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
 - 5. 모 범 상 : 교내·외에서 타 학생에게 모범이 될 선행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
 - ③ 학생준칙 제5장 포상 및 징계 제21조(포상) ②항 중 3(문화상), 4(체육상)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1(포상금 지급 대상)호에 해당할 때 포상금을 지급한다.
 - 1. 포상금 지급 대상
 - 가. 전공 관련 우수자 포상 : 전공 능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해당 전공교수가 추천한 학생 가) 전국규모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자.
 - ㄱ) 경진대회 입상자
 - ㄴ) 학술대회 발표 및 논문게재, 공모전 수상자
 - 나. 동아리 활동 우수자 포상 : 동아리 활동 능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해당 지도교수가 추천한 학생
 - 가) 전국규모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자.
 - ㄱ) 경진대회 입상자
 - ㄴ) 대한체육협회 및 생활체육협회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대회 입상자
 - 다. 체육활동 우수자 포상 : 체육활동능력이 우수한 학생으로 해당 지도교수가 추천한 학생
 - 가) 본교 재학생으로 운동부에 등록된 학생 중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주최하는 전국규모 대회의 당해연도 입상한 학생. (단, 체육특기자 학생은 현재 시행(2. 장학규정 제3장 장학금 지급 제8조(장학금) ⑥항)되고 있으므로 제외함.)

- 2. 기간 : 대회참가 시기는 직전학기 장학금 신청 마감 다음 날부터 해당 학기 장학금 신청 마감일까지. (단. 복학생의 경우 복학학기 시작일부터 6개월전까지 취득결과만 인정함.)
- 3. 포상등급은 1등급 국제규모 입상, 2등급 전국규모대회 1등, 3등급은 전국규모대회 2, 3등으로 구분하여 포상금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21조 (징계) 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학별 교수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징계한다. 다만, 사안이 중요할 경우에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.(개정 2016. 9. 1, 2017. 9. 1)
 - 1. 근신에 해당하는 행위
 - 가. 교수실 및 사무실 출입 시 결례한 자
 - 나. 신학전공 재학생으로서 신학전공 준칙(금주, 금연)을 위반한 자
 - 다. 비신사적인 행위 또는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자
 - 라. 교내 게시물을 무단 제거한 자
 - 마. 허가 없이 인쇄물, 간행물을 게시하거나 발간한 자
 - 바.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
 - 사. 성희롱. 성추행. 성폭력 등 성과 관련하여 성문란 행위를 한 자 (신설 2015. 1, 26)
 - 아. 집단활동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자 (신설 2016. 9. 1.)
 - 2. 유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
 - 가. 제1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
 - 나. 음주를 하고 학내에서 학생의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자
 - 다. 학업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
 - 라. 학생 상호간 싸움을 하거나 구타한 자
 - 마. 교내에서 금전놀이(사행) 행위를 한 자
 - 바. 타인의 금품 및 물품을 갈취 또는 절취한 자
 - 사. 허가 없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정치활동을 한 자
 - 아.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
 - 자. 성문란 행위를 고의로 범하는 자 (신설 2015. 1. 26)
 - 차. 집단활동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고의로 한 자 (신설 2016. 9. 1.)
 - 3.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
 - 가. 제2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
 - 나.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한 자
 - 다. 학교질서를 고의로 문란하게 한 자
 - 라. 고의로 학교시설 및 재산을 파손 또는 절취한 자
 - 마.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위조한 자
 - 바.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
 - 사. 성과 관련하여 학교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(신설 2015. 1. 26)

- 아. 집단활동에서 인권침해 행위로 학교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(신설 2016, 9, 1,)
- 4. 퇴학에 해당하는 행위
 - 가. 제3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
 - 나. 집단적 행위로 학사행정 및 수업을 고의로 방해한 자
 - 다. 교직원에게 반항하여 그의 위신을 심히 손상시킨 자
 - 라. 교내외에서 학교 명예를 훼손한 자
 - 마.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 - 바.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
 - 사. 성과 관련하여 행위의 정도가 높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 (신설 2015. 1. 26)
 - 아. 집단활동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 (신설 2016. 9. 1.)
- 제22조 (징계의 구분)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, 퇴학의 처분을 받는다.
 - 1. 근신기간은 3일 이상 1개월 이내로 하고 근신중인 학생은 학내의 생활을 통하여 과오를 반성하여야 하며 학내 과외활동에 참가하지 못한다.
 - 2. 정학은 유기와 무기로 구분하며, 유기정학은 1개월 이내, 무기정학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.
- 제23조 (권리의 정지 및 특별지도) ① 퇴학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학과·학 부교수 및 학과·학부장의 특별지도를 받으면서 일정기간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.
 - ② 근신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.
 - ③ 근신 이외의 징계처벌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상실된다.
- 제24조 (징계의 해제) 해당 학과·학부장이 무기정학중인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결과보고서(학생징계서 식 1호)와 징계해제 의견서(학생징계서식 2호)를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면 소속 학장은 학생상벌 위원회에 회부하고 학생상벌위원회는 심의하여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. (개정 2015, 1, 26)
- 제25조 (통보) 상벌위원회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처장은 징계사실을 관계 부서와 학부 모 및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.
- 제26조 (징계의 감면) 총장은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 6 장 학생상벌위원회

- 제27조 (목적) 학생지도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과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학생상 벌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.)를 둔다.
- 제28조 (구성)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이,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교무처장, 각 단과대학 학장 및 해당 학과 학과장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학생팀장으로 한다. (개정 2015. 1.

26, 2015. 5. 1)

제29조 (소집 및 정족수)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30조 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- 1. 학생의 지도에 관한 사항
- 2. 학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- 3.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31조 (위원장의 권한) 위원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.

- 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괄한다.
- 2. 위원장의 유고시나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부 칙

이 준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